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0,696,199	21,020,886
일반회계	609,331,050	18,279,932
특별회계	91,365,149	2,740,954
공기업특별회계	74,745,665	2,242,3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032,904	1,440,9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712,761	801,383
기타특별회계	16,619,484	498,585
지하수특별회계	327,000	9,810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9,129,513	273,885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475,010	44,2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859,675	55,790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3,718,286	111,549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0,000	3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19,27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